

| | | |
|----------|------|--|
| 의안 번호 | 2099 |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style="text-align: center;">검 토 보 고 서</p>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6.(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5. 26.(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6. 16.(금)

2.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사회적 배려 대상인 한부모 가족, 등록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어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례 내용에 맞는 용어 및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추가 신설

(안 제7조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제증명

- 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뜻에 맞게 제목 등 용어 정비
(안 제7조, 별표 3)
 - 수수료의 감면 용어를 수수료의 면제로 변경
- 다. 수수료 징수할 금액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무료부분 불필요로 삭제 (별표 1)
 -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규정 삭제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 대상인 한부모 가족, 등록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조례 용어와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